

전주지방법원 2017. 1. 3 선고 2016가단14500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

2. B(개명전 성명: C)

변론 종결2016. 12. 20.

판결 선고2017. 1. 3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9,764,508원 및 그 중 19,764,380원에 대하여 2016. 4. 21.부터 2016. 7. 30.까지 연 12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남원시 D 대 72m²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한 2015. 10. 1.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. 10. 6. 접수 제20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A은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(이하 '농협은행'이라 한다)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4. 7. 23.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,000만 원, 신용보증기한 2019. 7. 20.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면 위 피고는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(2013. 9. 28.부터 연 12%로 정하여져 있다)과 계산에 따라 산출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2015. 12. 1.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자,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. 4. 21. 농협은행에 20,105,590원을 대위변제하여 준 후 위 피고로부터 341,210원을 회수하였으며, 위 회수에 따라 12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.

라. 한편, 피고 A은 2015. 10. 1.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,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. 10. 6. 접수 제20410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'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19,764,508원(20,105,590원-341,210원+128원)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잔액 19,764,38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6. 4. 21.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. 7. 30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

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은 무자력자가 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앞서 든 갑 제8호증 및 을나 제1, 2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2016. 12. 8.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,032만 원인 사실(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와 같거나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),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는 피고 A을 채무자로 한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(2011. 1. 4.자 근저당권자 동남원새마을금고, 채권최고액 2,600만 원인 근저당권과 2013. 2. 15.자 근저당권자 피고 B, 채권최고액 3,000만 원의 근저당권),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것이 20,159,671원, 피고 B에 대한 것이 3,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,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피고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이원근